

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6월 9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국토교통부
장

김 현 미

●법률 제17454호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”을 “스마트도시기반시설, 건축물, 공작물 등을 설치·건축·구축·정비·개량 및 공급·운영하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1명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”로 한다.

제4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바,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의 구축 등을 규정하는 한편,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6월 9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국토교통부
장

김 현 미

●법률 제17455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국가 또는 시·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4조제2항제2호 중 “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”을 “그 차령이 6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, 현행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.

또한, 현행법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를 중고차로 대폐차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만일 사고 등으로 3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령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중고차를 확보해야 되므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정부 및 시·도가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6월 9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국토교통부장

김현미

●법률 제17456호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”을 “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·활용”으로 한다.

제42조의 제목 “(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)”을 “(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달기구의 지정·운영)”으로 한다.